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306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
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A

검 사 송기현(기소), 박재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상혁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5.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엑스, 구 트위터)'에 게시한 '용돈 줄 사람? #중학생 #용돈 #대구'라는 게시글을 보고 2026. 5. 4.경 위 'X' 서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5. 8. 08:40경 불상지에서 위 'X' 서비스 내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부터 18:44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의복을 모두 탈의하도록 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동시에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어 위 초등학교 후문 맞은편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킨 다음 그 뒷좌석에서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¹⁾.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도 마치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위 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17, 23, 24, 36, 첨부서류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리에 비추어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로만 특정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이를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죄수 등 판단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성적 굴욕감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2026.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도정원 _____

 판사 우정우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28

판사 강화현 _____